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㉠

2019년 4월 2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김 부 겸
장 관

●대통령령 제29674호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중이용업주"를 "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"1억원"을 "1억5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1억원"을 "10억원"으로 한다.

별표 2의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천만원"을 "1,5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천만원"을 "1,200만원"으로 하

고, 같은 표의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"90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"500만원"을 "7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"24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60만원"을 "2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"80만원"을 "120만원"으로 한다.

별표 3의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억원"을 "1억5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"9천만원"을 "1억3,5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"8천만원"을 "1억2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"7천만원"을 "1억5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5급의 한도 금액란 중 "6천만원"을 "9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"5천만원"을 "7,5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7급의 한도 금액란 중 "4천만원"을 "6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"3천만원"을 "4,5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9급의 한도 금액란 중 "2천250만원"을 "3,8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천880만원"을 "2,7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11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천500만원"을 "2,3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천250만원"을 "1,9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표의 13급의 한도 금액란 중 "1천만원"을 "1,5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표의 14급의 한도 금액란 중 "63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한다.

별표 6 제2호라목부터 과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마목(중건의 라목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차목(중건의 자목)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"법 제13조의2제1항"을 "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라.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제1항 제2호의3	300
---	-----------------	-----

마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제1항 제3호	300
--	---------------	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(같은 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제1호·제4호,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·제4호,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의 보험금액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,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3천만원,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,

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을 그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,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